

#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고시에 따른 안내

- ◇ 본 안내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이 고시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 처리시 이해를 돕고자 대한수의사회에서 세무사 및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 ◇ 이에 향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면세범위 등 내용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I. 개요

- 2012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농림수산식품부)가 적용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발생하는 동물 진료용역은 진료항목에 따라 면세과 과세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매출 신고(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 공제도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세무 처리하여야 함

## II.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5. 의료보전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전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전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아래와 같다.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음,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수술
- 병리학적 검사

### III. 부가세 신고관련 처리원칙

#### 매입

- 면세 관련 매입(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므로 매입 증빙(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으로 신고
- 과세 관련 매입(항암제 등 과세로만 사용되어지는 품목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으로 신고
- 공통매입(임차료, 인테리어비, 차량유지비, 광고비, 비품 구입비 등)은 동물병원과 같이 과세와 면세수입이 모두 발생하는 “과세·면세 겸업자” 들이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며, 공통매입 중 면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하지 않음

#### 실제 공제 금액(A) 계산식

$$A = \text{매입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 (\text{매입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times \text{면세수입 비율})$$

#### 매출

- 면세관련 매출은 부가세 신고 시 과세관련 매출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제증명(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외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함
- 전자차트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 진료항목을 구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과세관청의 면세대상 확인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차트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 부분 매출을 과세와 구별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과세관청의 면세대상 확인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매입공제 산출 예시〉

매입 (모두과세)	예방접종약	100만원+10만원(부가세)	1,320만원
	항암제	100만원+10만원(부가세)	
	수술기구	1,000만원+100만원(부가세) (A)	
매출 (면세+과세)	예방접종(면세)	1,000만원 (면세)	4,000만원 (세금제외)
	항암제투여(과세)	1,000만원+100만원 (과세)	
	수술(면세+과세)	2,000만원 (면세+과세) - 면세 : 1,200만원 - 과세 : 800만원+80만원(부가세) (B)	
매입공제 (면세+과세)	예방접종(면세)	없음	62만원
	항암제투여(과세)	10만원	
	수술(면세+과세) = 공통매입	52만원 = 100만원 - (80만원×60%) (A) (B) ※ 60% = 수술중 면세수입 비율 (1,200/2,000×100)	

## IV. 기 타

- 전자차트프로그램 내에서 과세와 면세부분을 프로그램 상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옵션을 선택(해당 전자차트제조업체에 문의)하면 추후 세무조사 등 증빙자료 제출 시 계산서·영수증 등과 비교 시 용이
- 카드 단말기 자체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주는 기능은 단말기 기종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구형의 경우 설정을 해줘야 하며 최신 기종의 경우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해당 단말기 업체에 문의)
- 세무처리와 관련한 서류제출 등 상세한 부분은 세무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세무사와 논의

## Q & A

### 1. 병리학적 검사는 어느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하나요?

- ▶ 병리학적 검사는 방사선(X-ray, CT), 초음파검사, MRI검사 및 내시경검사를 제외한 질병의 검사를 의미함 (농림수산식품부 유권해석, 2012.2.2)

### 2. 한 건의 진료에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 ▶ 예를 들어, 예방접종과 외이염 처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예방접종은 면세, 외이염 처치는 과세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면세와 과세는 매입과 매출 두 가지를 모두 별도로 관리·신고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 상에서 미리 설정해 놓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3. 마취제나 항생제 등 과세와 면세부분에 모두 사용되는 약품의 매입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과세와 면세매출 모든 부분에 사용하는 항목은 공통매입부분으로 설정하여 총 매출에서 면세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므로 이에 따라 계산 후 신고하면 됩니다. (V)